

#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

(안영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47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.

발 의 자 : 안영호, 문희성, 정재환  
박경흠, 이명녀, 문기호

## 1. 제정이유

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 사업 대상지의 시설 유지관리, 주민역량 강화, 공동체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책무(안 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- 사후관리계획 수립 등(안 제5조)
- 재정지원(안 제6조)
- 지도·감독(안 제7조)

##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 4. 관계법규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및 제3조

## 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5. 9. 24. ~ 10. 1.(7일간) / 의견없음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따로 붙임

##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도시 재생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에 사업효과가 지속·확산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”이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.
2. “사후관리계획”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업효과를 지속·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.
3. “도시재생기반시설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.
4.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책무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사업효과가 지속·확산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사후관리계획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 다만,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한 중장기적·성과 목표
2.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·관리 계획
3. 도시쇠퇴 방지 대책
4.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업성과 확산 계획
5.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점검계획
6.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
7.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
8.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,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 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해야 한다.

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(재정지원)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,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
2.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

3.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
4.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·관리
5.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는 자에게 지원사업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·시설 등을 검사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또는 검사·점검 결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근 거 법 규

### □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“도시재생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
가.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

1)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

2)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

3)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·사회적·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

4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 및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

5)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

6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

7) 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항만 재개발사업

8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상권 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

9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계획 시설사업 및 시범도시(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) 지정에

따른 사업

10)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사업

11)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빈집정비 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

12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주택사업

13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

14)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나.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(이하 “혁신지구재생사업”이라 한다)

다.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 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(이하 “도시재생 인정사업”이라 한다)

10. “도시재생기반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

나.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, 마을회관, 공동작업장,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

**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

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 「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」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·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2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3.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,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
4.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2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우며,
- 조례 제정 이후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비용추계가 가능함

### 3. 작성자

- 소 속: 도시과
- 직 급: 지방공업주사보
- 성 명: 고보성
- 연락처: (052)290-3932